

부촌4차아파트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부천시 오정동 140-6번지 외 10필지 소재 부촌4차아파트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20일

부 천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나. 명 칭 : 부촌4차아파트외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140-6번지 외 10필지
- 나. 면 적 : 5,195.7m²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 수 예 정 일 : 미정
- 나. 준 공 예 정 일 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 합 명 칭 : 부촌4차아파트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한의상)
- 나. 사 무 실 소 재 지 :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1

5.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 내용

- 조합정관 변경
- 조합임원 변경
- 대의원 변경
- 조합원 변경

6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
-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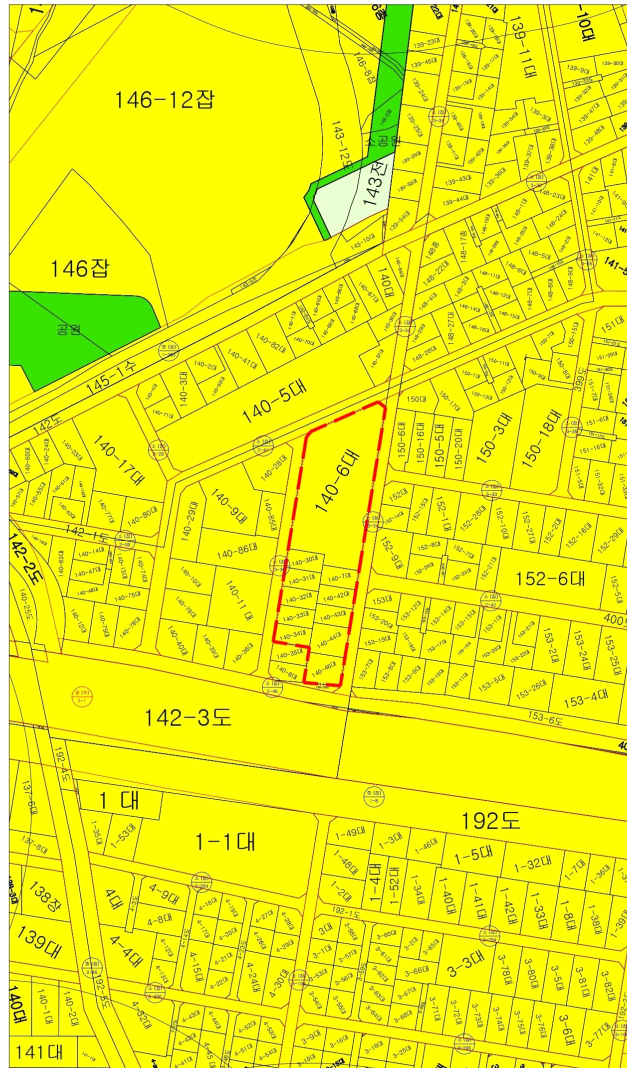
도면표시 번호	사업명	위치	면적(m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부춘4차아파트외 가로주택정비사업	부천시 오정동 140-6번지 외 10필지	5,195.7m²	-	5,195.7m²	-

○ 사업시행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위치	면적(m²)	결정(변경)사유
신설	-	부천시 오정동 140-6번지 외 10필지	5,195.7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개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

□ 붙임 : 지형도면 고시

지형도면고시도



금회 변경 및 결정
사항에 한하여 유효함

※ 본 고시도면은 금회 변경사항에 한하여 효력을 가짐

[illegible]

縮尺 = 1 : 1000
 



본 도면은 부천시 고시 제2023-267호(2023. 11. 20.)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
부천시 고시 제2023-267호
2023년 11월 20일

승인권자	부천시장
지정일자	2023년 11월 20일
고시년도	2023년 11월 20일
고시번호	부천시 고시 제2023-267호
작성연월일	2023년 11월 2일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	부천시청

구분	작성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	파검수자		
소속		주덕정비과	주덕정비과
직위			
직급			
성명		구은선	김은미
확인(인)			